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웅지세무대학교 | 학 생 위 원 회 규 정 | 문서번호 | 6-3-09(E)-0 |
| | | 제정일자 | 04.10.23 |
| | | 최근개정 | 15.06.01 |
| | | 주관부서 | 학생처 |
| | | 홈페이지공개 | 공 개 |

웅지세무대학교 학생처

제1조(목적) 본 대학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교학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본 대학 교수 중 전임교원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학처 학생팀 담당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0.04.01., 2015.02.13.>

제3조(회의) ①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 재적위원 1/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 <개정 2007.01.01.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학생의 생활지도 방침의 연구수립에 관한 사항
2. ~~삭제~~ <2015.06.01.>
3. 학생의 교내외활동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보고 및 건의)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6조(특별연구위원회) ① 위원회에 특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특별연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연구 조사함을 그 임무로 한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1판-제정 2004.10.23.> <시행 2004.10.25.>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07.01.01.>

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3판-개정/시행 2010.04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학생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본 대학 교수 중 전임교원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~9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학생처 담당직원으로 구성한다.

부 칙 <4판-개정/시행 2015.02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2조(구성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학생처장”을 “교학처장”으로 “7~9명”을 “7인이내”로 “학생처”를 “교학처 학생팀”으로 개정한다.

부 칙 <5판-개정/시행 2015.06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4조(기능) 2항을 삭제한다.